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소경제육성및수소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 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있는”을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을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이하 “수소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 ----- ----- -----.
1.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u>있는</u> 지역일 것	1. ----- ----- ----- <u>있</u> <u>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u> <u>는</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수소특화단지가 있는</u>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u>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u> <u>하</u>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975